

의안번호	제 160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5월 일 (제300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장병학 교육의원외 6인
발의 연월일	2011년 5월 3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0
----------	-----

(장병학 교육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1년 5월 3일

발의자 : 장병학, 최미애, 박상필, 이광희,
전웅천, 최진섭, 하재성의원(7인)

1. 제정이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2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30조 제2항, 제3항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의 : 충청북도교육청(산업정보평생과)
- 라. 기타 : 입법예고(2011.4. 7.~4.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지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관 계 법령 발췌

□ 도서관법(전부개정, 2006.10. 4 제8029호)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 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전부개정 ⇒ 도서관 및 독서진증법, 동법시행령 폐지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 4 장 도 서 관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임기·회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②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 ①도서관 장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관장이 정한 도서선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의 구성·임기·회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